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 가 의뢰인 **군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건 명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제지하층 제비04호 외
5개호 소재 구분건물**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507-21-22007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31)221-7878 FAX : (031)221-0666



감정평가 심의인증서

제 출 처	군포신용협동조합		
발 의 처	경기지사	감정서번호	2507-21-22007
평가목적	공매	담당평가사	박성민
물건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제지하층 제비04호 외		
감정평가액	\ 3,898,000,000		

◆ 심의 내용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방법의 적정성
3. 평가자료채택 및 기재내용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채규정과의 적합성
5. 협약내용 및 협조사항의 이행
6. 기타 감정평가에 관련된 사항

본 감정평가서는 우리 법인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으며, 제 규정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감정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위 감정평가서는 우리 법인의 감정평가심의위원회 규정의 심의절차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되었기에 본 심의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박성민

박성민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
대표자 공찬호



감정평가액 **삼십팔억구천팔백만원정 (₩3,898,000,000.-)**

의뢰인	군포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채무자	-	제출처	군포신용협동조합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스페이스 (수탁자:신영부동산신탁주식회사)	기준가치	시장가치		
목록 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 조건	-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7-23	2025-07-23	2025-07-25	

감정평가내용	공부(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6개호	구분건물	6개호	-	3,898,000,000	
		이하	여백			
합계					₩3,898,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사자 *공찬호*

감정평가사 *박성민*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306번길 55	660 리더스 스마트허브	공장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672,000,000	비준가액
				지2층	3,190.64			
				지1층	3,215.32			
				1층	2,091.46			
				2층	2,245.26			
				3층	2,245.26			
				4층	2,245.26			
				5층	2,117.76			
				옥탑1층 (연면적제외)	116.61			
				대 준주거지역	3,690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지하층 제비04호	296.97	296.97		
				소유권	121.4535	121.4535		
				1 ----- 대지권	3,690x---- 3690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나				(내)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14호	45.6	45.6	858,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18.6494	18.6494		
				1 ----- 대지권	3,690x---- 3690			
다				(내)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15호	45.6	45.6	858,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18.6494	18.6494		
				1 ----- 대지권	3,690x---- 3690			
라				(내)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제1층 제116호	45.6	45.6	858,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18.6494	18.6494		
				1 ----- 대지권	3,690x---- 3690			
마				(내)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6호	68.4	68.4	326,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27.9741	27.9741		
				1 ----- 대지권	3,690x---- 3690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바				(내)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11호	68.4	68.4	326,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27.9741			
				1 ----- 대지권	3,690x----	27.9741		
합 계							\ 3,898,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소재 시흥대야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군포신용협동조합에서 의뢰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가. 총괄 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306번길 55)		
건물명 및 동·층·호수	리더스스마트허브 제지하층 제비04호 외 5개호		
용도지역	준주거		
주 용 도	공장		
사용승인일자	2020-10-21		
주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층수(지하/지상)	호/가구/세대	
	-2/5	134/-/-	
면 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3,690	2,291.7	17,350.9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대상물건 개요

일련 번호	건물명	층	호	면 적(㎡)				전용률 (%)	용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계약면적	대지사용권		
가	리더스 스마트허브	지하	비04	296.97	274.126	571.096	121.4535	52	지식산업센터 (공장)
나	리더스 스마트허브	1	114	45.6	42.0923	87.6923	18.6494	52	제2종근린생활시 설(일반음식점)
다	리더스 스마트허브	1	115	45.6	42.0923	87.6923	18.6494	52	제2종근린생활시 설(일반음식점)
라	리더스 스마트허브	1	116	45.6	42.0923	87.6923	18.6494	52	제2종근린생활시 설(일반음식점)
마	리더스 스마트허브	2	206	68.4	63.1385	131.5385	27.9741	52	제2종근린생활시 설(사무소)
바	리더스 스마트허브	2	211	68.4	63.1385	131.5385	27.9741	52	제2종근린생활시 설(일반음식점)
합 계				570.57	526.6799	1,097.2499	233.3499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가치

가. 개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공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07월 23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5년 07월 23일**자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함.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인근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음.

나.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방식,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 따라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그 밖의 사항

- 가.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현황 호별표식에 의거 확인하였음.
- 나. 본건중 일련번호 가~마 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 벽체로 구분되어 구조 및 이용상 독립된 구분건물임.
- 다. 본건중 일련번호 바 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접한 호수 (208호~210호, 212호~214호)와 벽체구분없이 일체로 사용중인 근린생활시설인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라. 본건중 일련번호 가 의 내부구조는 기준시점 현재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귀 조합과 협의 후 집합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건축물현황도면(별지첨부)에 의거 확인 하였으니 업무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자료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일자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 (원)	비고
				사용승인일				
㉠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3/307	지식산업센터 (공장)	2022-06-22	131.97	4,280,000	565,379,650	-
				2020-10-21				
㉡	대야동 664-6	태진 지식산업센터 -/5/503	지식산업센터	2022-03-25	303.48	3,490,000	1,060,565,007	-
				2021-12-16				
㉢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1/112	제2종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2022-10-17	45.6	18,500,000	842,892,900	-
				2020-10-21				
㉣	대야동 652-2	파크센트로 -/1/101	제2종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2024-11-27	60.21	16,600,000	1,000,000,000	-
				2019-10-29				
㉤	대야동 646-1	대야역전프라자 -/1/113	제1종근린생활 시설 (소매점)	2024-06-18	39	14,400,000	560,000,000	-
				2020-03-06				
㉥	대야동 650	골드웨이 II -/4/404	근린생활시설 (기타)	2023-06-16	96.72	4,170,000	403,238,000	-
				2022-09-2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인근지역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기준시점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 (원)	평가 목적
				사용승인일				
①	대야동 660	리더스마트허브 -/1/117	제2종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2025-02-12	45.6	16,400,000	750,000,000	공매
				2020-10-21				
②	대야동 660	리더스마트허브 -/2/212	제2종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2025-02-12	68.4	4,090,000	280,000,000	공매
				2020-10-21				
③	대야동 660	리더스마트허브 -/1/118	제2종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2024-05-08	45.6	15,200,000	694,000,000	공매
				2020-10-21				
④	대야동 660	리더스마트허브 -/2/207	제2종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2024-05-08	135.79	4,520,000	614,000,000	공매
				2020-10-21				
⑤	대야동 660	리더스마트허브 -/4/410	지식산업센터 (공장)	2024-05-08	45.6	3,680,000	168,000,000	공매
				2020-10-21				
⑥	대야동 660	리더스마트허브 -/지하1/B03호	지식산업센터 (공장)	2023-11-13	136.8	1,990,000	272,000,000	담보
				2020-10-21				
⑦	대야동 660	리더스마트허브 -/1/105	제1종근린생활 시설 (소매점)	2024-06-27	45.6	15,000,000	685,000,000	담보
				2020-10-2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거래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본건 인근	지식산업센터	지층	2,000,000원/㎡ ~ 2,500,000원/㎡	-
	근린생활시설	1층	15,000,000원/㎡ ~ 18,000,000원/㎡	-
	근린생활시설	2층	4,500,000원/㎡ ~ 5,000,000원/㎡	-

라. 경매통계 분석

▪ 6개월 평균

[출처: 인포케어]

용도	경 기			시 흥 시			대 야 등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낙찰 가율	낙찰률 평균	낙찰 건수
상가 / 근린상가	56.79	52.71	388	45.02	43.34	38	0	0	0
공장 / 아파트형공장	51.34	52.08	303	57.20	53.85	35	57.77	57.77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개 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text{비준가액} = \text{거래사례 가격(원/㎡)}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나. 비교사례 선정

■ 거래사례 선정 기준

감정평가실무기준 3.3.1.2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 거래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대상물건	비교사례 선정
일련번호 가	거래사례 ㉠
일련번호 나,다,라	거래사례 ㉡
일련번호 마,바	거래사례 ㉢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시점	전유면적 (㎡)	단가 (원/㎡)	거래금액 (원)
				사용승인일			
㉠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3/307	지식산업센터 (공장)	2022-06-22	131.97	4,280,000	565,379,650
				2020-10-2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시점	전유면적 (㎡)	단가 (원/㎡)	거래금액 (원)
				사용승인일			
㉔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1/112	제2종근린생활 시설(일반음식점)	2022-10-17	45.6	18,500,000	842,892,900
				2020-10-21			
㉕	대야동 650	골드웨이 II -/4/404	근린생활시설 (기타)	2023-06-16	96.72	4,170,000	403,238,000
				2022-09-2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라.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발표한 부동산지수(생산자물가지수)는 전국단위의 가격지수로서, 가격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 자본수익률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역	유형	기간	자본수익률(%)
가	㉠	경기	오피스	2022년 02분기	0.71
				2022년 03분기	0.63
				2022년 04분기	0.21
				2023년 01분기	0.15
				2023년 02분기	0.27
				2023년 03분기	0.03
				2023년 04분기	0.28
				2024년 01분기	0.86
				2024년 02분기	0.64
				2024년 03분기	0.55
				2024년 04분기	0.2
				2025년 01분기	0.77
				2025년 02분기 이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유 형	기 간	자본수익률(%)
나,다,라	㊸	경기	집합상가	2022년 04분기	0.15
				2023년 01분기	-0.07
				2023년 02분기	0.01
				2023년 03분기	-0.04
				2023년 04분기	0.22
				2024년 01분기	0.36
				2024년 02분기	0.43
				2024년 03분기	0.32
				2024년 04분기	0.15
				2025년 01분기	0.07
				2025년 02분기 이후	-
마,바	㊸	경기	집합상가	2023년 02분기	0.01
				2023년 03분기	-0.04
				2023년 04분기	0.22
				2024년 01분기	0.36
				2024년 02분기	0.43
				2024년 03분기	0.32
				2024년 04분기	0.15
				2025년 01분기	0.07
				2025년 02분기 이후	-

■ 시점수정치 결정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산정기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㊸	경기(오피스) (2022-06-22 ~ 2025-07-23)	$(1+0.0071 \times 9/91) \times (1+0.0063)$ $\times (1+0.0021) \times (1+0.0015)$ $\times (1+0.0027) \times (1+0.0003)$ $\times (1+0.0028) \times (1+0.0086)$ $\times (1+0.0064) \times (1+0.0055)$ $\times (1+0.002) \times (1+0.0077)$ $\times (1+0.0077 \times 114/90) \approx 1.05778$	1.05778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산정기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나,다,라	㊸	경기(집합상가) (2022-10-17 ~ 2025-07-23)	$(1+0.0015 \times 76/92) \times (1-0.0007)$ $\times (1+0.0001) \times (1-0.0004)$ $\times (1+0.0022) \times (1+0.0036)$ $\times (1+0.0043) \times (1+0.0032)$ $\times (1+0.0015) \times (1+0.0007)$ $\times (1+0.0007 \times 114/90) \approx 1.01674$	1.01674
마,바	㊸	경기(집합상가) (2023-06-16 ~ 2025-07-23)	$(1+0.0001 \times 15/91) \times (1-0.0004)$ $\times (1+0.0022) \times (1+0.0036)$ $\times (1+0.0043) \times (1+0.0032)$ $\times (1+0.0015) \times (1+0.0007)$ $\times (1+0.0007 \times 114/90) \approx 1.01611$	1.0161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

■ 일련번호 가 / 비교사례 ㉠

조 건	세 부 항 목 (공업용)	비 교 치		검 토 의 견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외부진출입의 용이성	1.00	1.00	대등함.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의 폭, 구조 등)			
	동력자원 및 노동력확보의 용이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등			
단지 내부요인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1.00	1.00	대등함.
	입주업체의 용도 및 지원시설의 규모			
	단지 내 화물용 및 승객용 승강기의 편의성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유무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0.50	거래사례 대비 층별, 위치별효용 및 전유부분의 면적 등에서 열세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			
	전유면적의 비율			
	향별 효용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0.5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일련번호 나 / 비교사례 ㉔

조 건	세 부 항 목 (상업용)	비 교 처		검 토 의 견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1.00	대등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의 폭, 구조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0	대등함.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등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일련번호 다 / 비교사례 ㉔

조 건	세 부 항 목 (상업용)	비 교 치		검 토 의 견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1.00	대등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0	대등함.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등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일련번호 라 / 비교사례 ㉔

조 건	세 부 항 목 (상업용)	비 교 치		검 토 의 견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1.00	대등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0	대등함.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등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일련번호 마 / 비교사례 ㉞

조 건	세 부 항 목 (상업용)	비 교 치		검 토 의 견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0.95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폭, 구조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3	거래사례 대비 건물의 노후도 등에서 우세함.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15	거래사례 대비 층별효용 등에서 우세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1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일련번호 바 / 비교사례 ㉞

조 건	세 부 항 목 (상업용)	비 교 치		검 토 의 견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1.00	0.95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대중교통의 편의성 등에서 열세함.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의 폭, 구조 등)			
단지 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1.00	1.03	거래사례 대비 건물의 노후도 등에서 우세함.
	건물 전체의 공실률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 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 요인	층별 효용	1.00	1.15	거래사례 대비 층별효용 등에서 우세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등			
기타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1.00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1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 번호	비교 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가	㉠	4,280,000	1.000	1.05778	0.500	2,263,649	296.97	672,235,844	672,000,000
나	㉡	18,500,000	1.000	1.01674	1.000	18,809,690	45.6	857,721,864	858,000,000
다	㉢	18,500,000	1.000	1.01674	1.000	18,809,690	45.6	857,721,864	858,000,000
라	㉣	18,500,000	1.000	1.01674	1.000	18,809,690	45.6	857,721,864	858,000,000
마	㉤	4,170,000	1.000	1.01611	1.125	4,766,826	68.4	326,050,898	326,000,000
바	㉥	4,170,000	1.000	1.01611	1.125	4,766,826	68.4	326,050,898	326,000,000
합 계							570.57	-	3,898,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주된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본 평가는 전술된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참고자료(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 등)'를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 번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 스마트허브	지하	비04	296.97	2,263,649	672,000,000
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 스마트허브	1	114	45.6	18,809,690	858,000,000
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 스마트허브	1	115	45.6	18,809,690	858,000,000
라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 스마트허브	1	116	45.6	18,809,690	858,000,000
마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 스마트허브	2	206	68.4	4,766,826	326,000,000
바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 스마트허브	2	211	68.4	4,766,826	326,000,000
합 계				6개호	570.57	-	3,898,000,000

- 끝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대 상 물 건
(주 위 환 경)



지 리 적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소재 시흥대야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지식산업센터,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환경은 무난한 편임.
교 통 상 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시흥대야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수단은 편리하며 주변 가로로건 양호하여 제반 차량의 흐름 및 소통은 원활함.
건 물 의 구 조 및 이 용 상 태	<p>■건물의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내 제지하층 제비04호 외 5개호로서, (사용승인일자: 2020-10-21) 외 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몰탈위페인팅, 인테리어 등 마감. 창 호: 페어글라스 및 샷시창 등 마감.</p> <p>■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지식산업센터(공장)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나~마: 공히 각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바: 인접한 호수와 벽체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세부사항은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참조)</p>
위 생/냉 난방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 지 의 형 상 및 이 용 상 태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리더스스마트허브]'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접 면 도 로 상 황	남동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남서측과 북측으로 노폭 약1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 지 이 용 계 획 및 공 법 상 제 한 사 항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1-04-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국토해양부 제 2012-187호)<공공주택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 부 와 의 차 이	본건중 일련번호 바 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인접한 호수(208호~210호, 212호~214호)와 벽체구분없이 일체로 사용중인 근린생활시설인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임 대 관 계 및 기 타 사 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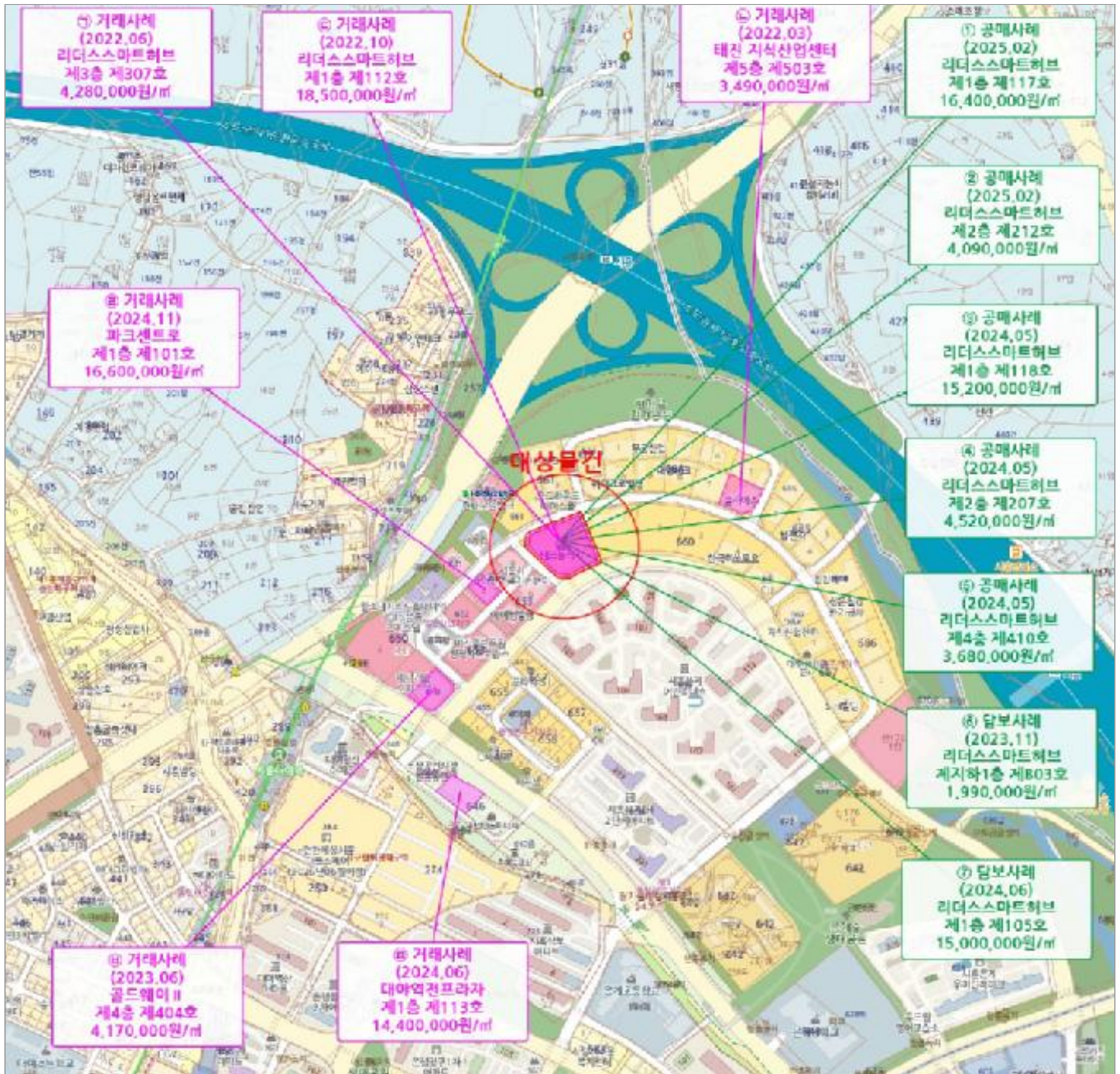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제지하층 제비04호 외 5개호



상세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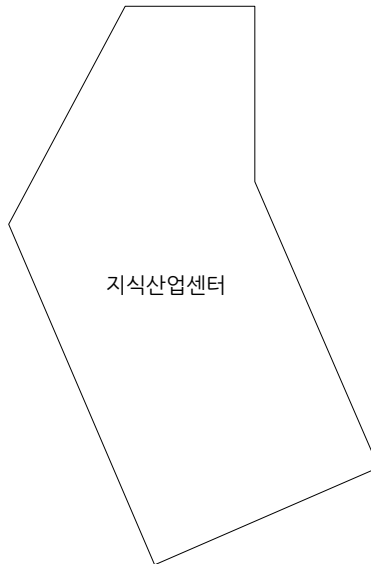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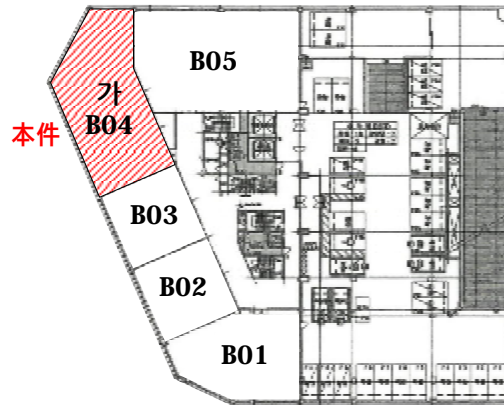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660 리더스스마트허브 제지하층 제비04호 외 5개호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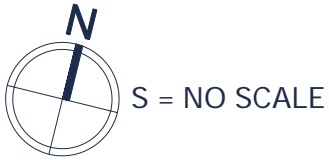


리더스스마트허브 제지1층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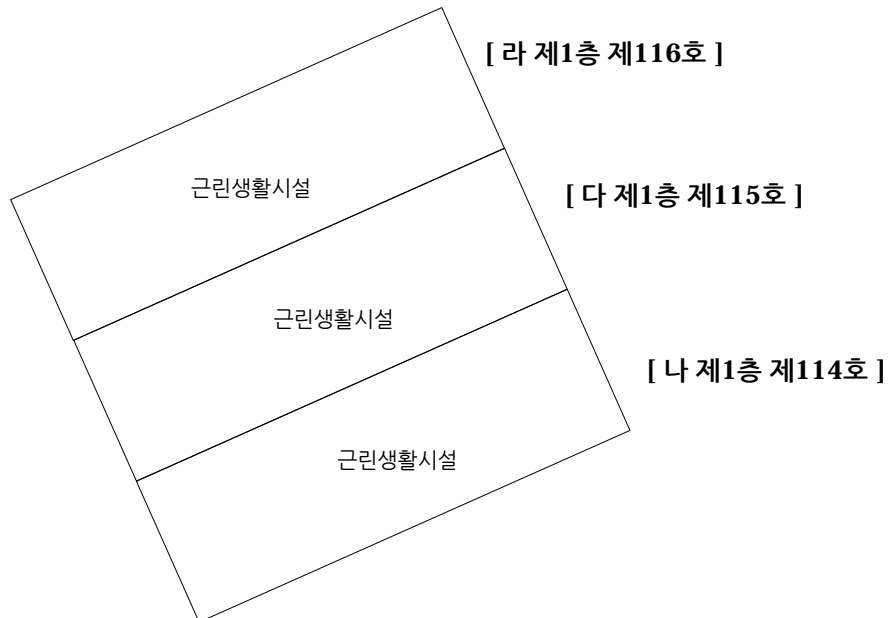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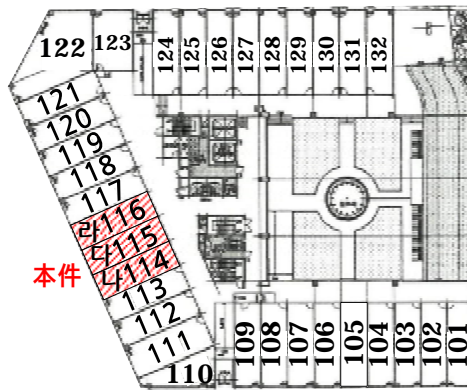


[가 제지1층 제B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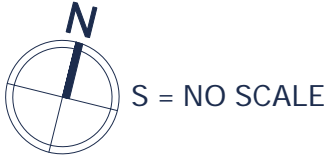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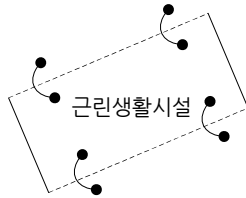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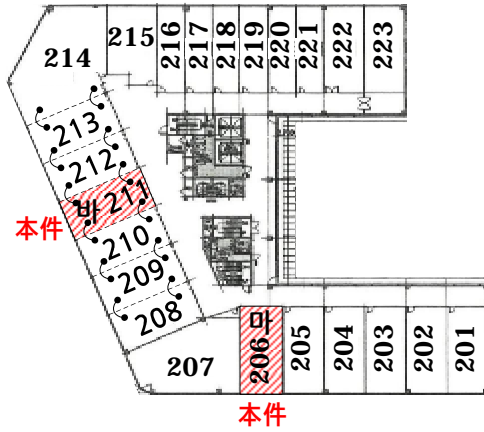
리더스스마트허브 제1층 호별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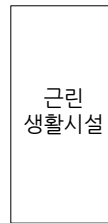
건물이용 및 임대개황도



리더스스마트허브 제2층 호별배치도



[바 제2층 제211호]



[마 제2층 제206호]

임대상황	임대부분	임차인	임대내역		비고
			임대차보증금	월임대료	
	본건 전체	미	상	임	-

사 진 용 지



본건 건물 전경



주 위 전 경

사 진 용 지



일련번호 가 출입문 전경



일련번호 나 전경

사 진 용 지



일련번호 다 전경



일련번호 라 전경



일련번호 마 전경

사 진 용 지



일련번호 바 전경



일련번호 바 내부전경